

## 제16장 노동

### 제16.1조 목적

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.

- 가. 자유무역과 투자가 「노동에 있어서의 기본적 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」(1998)(이하 “국제노동기구 선언”이라 한다) 및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선언(2008)의 원칙을 준수하는 고용조건과 함께,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공동의 기대를 증진하는 것. 양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관계에 이러한 목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- 나. 이 장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력과 대화를 강화함으로써, 각 당사국의 노동제도, 건실한 노동정책 및 관행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각 당사국의 역량과 능력개선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장려하고 달성하는 것
- 다. 각 당사국 영역 내에서 근로조건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고,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며 증진하고 집행하는 것, 그리고
- 라. 상호 관심 있는 노동 문제에 대하여 논의와 의견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

### 제16.2조 일반원칙

1. 양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으로서의 그들의 의무와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따른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한다. 각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선언에 기술된 다음의 권리를 자국의 법, 규정 및 그에 따른 관행 내에 채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가.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

나.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철폐

다.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, 그리고

라. 고용 및 직업상 차별의 철폐

2. 양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 법률을 제정하고, 이에 따라 자국의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자국의 노동법, 규정, 정책 및 관행을 채택하고 수정할 수 있는 상대국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한다. 각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 법률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3.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노동 법률의 집행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.

4. 양 당사국은 이 장에서 양국의 의도가 양국의 노동기준을 조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,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양국의 무역관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임을 인정한다.

5. 양 당사국은 양국의 역량, 특히 기술적 역량과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이 장에 따른 양국의 약속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.

6. 양 당사국은,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,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작위나 부작위를 통하여, 이 장에 따라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노동법을 포함한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.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집행 자원의 배

분에 대하여 재량을 행사하고 집행 자원의 할당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한다.

7. 면제와 이탈이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불합치할 경우, 어떠한 당사국도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제1항을 이행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,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고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않는다.

8. 각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법, 규정, 정책 및 관행이 보호무역주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.

### 제16.3조

#### 절차적 보장 및 대중 인식

1. 각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서 자국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이 자국 노동법의 집행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을 가지도록 보장한다. 그러한 재판소는 행정, 준사법, 사법 또는 노동재판소를 포함할 수 있다.

2. 각 당사국은 자국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그러한 재판소의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하도록 보장한다. 양 당사국은 국내적으로 자국의 노동법, 규정,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공개적 이용 가능성으로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할 것이고, 자국의 법, 규정, 정책 및 관행에 따라 이 장에 따라 수행된 활동을 대중에 알리기에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다.

3.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들이 자국의 노동법과 규정상 자신의 권리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구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.

### 제16.4조

#### 제도적 장치

## 노동위원회

양 당사국은 노동위원회를 설치한다.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노동부 또는 그 밖의 관련 부처의 적절한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한다.

### 1. 노동위원회는

- 가. 협력 활동의 합의된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.
- 나. 합의된 협력활동을 감독하고 평가한다.
- 다. 상호 간 관심 있는 노동 사안에 대한 대화의 장으로서 기능한다.
- 라. 이 장의 이행 및 결과를 검토한다.
- 마. 정보 교환을 통하여 협력을 촉진한다.
- 바.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한다. 그리고
- 사. 공동위원회가 결정하는 이 장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고려한다.

2. 노동위원회는 부속서 16-가에 규정된 협력 활동을 포함하여 공통의 관심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,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내에,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한다. 회의는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기술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.

3. 노동위원회는 이 장의 범위 내에 있는 그 밖의 모든 문제를 고려할 수 있고, 가능한 신규 협력 분야도 확인할 수 있다.

4. 노동위원회의 업무는 이 장에 따른 약속 및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고,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대화와 효과적인 협력에 기초한다.
5.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이루어질 것이다.

#### 접촉선

6.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노동부 또는 그 밖의 관련 부처로부터 접촉선을 지정한다.
7. 접촉선은 부속서 16-가에 따른 노동에 대한 협력 활동의 조정을 포함하여 노동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.

#### 대중의 참여

8. 노동위원회와 각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관련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다.

### 제16.5조

#### 협의

1.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해석 및 적용에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고,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우호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선의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, 협의, 정보의 교환 및 협력을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.
2.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접촉선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협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접

촉선에 제출된 협의 요청의 접수를 한쪽 당사국이 인지한 때부터 60일 내에 개시된다. 양 당사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자문 또는 지원을 구할 수 있다.

3.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, 양 당사국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협의 기간을 결정한다.

4. 한쪽 당사국이 1차 협의 후에 사안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,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노동위원회가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위원회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요청 후 90일 이내에 소집되며, 그 사안의 해결책에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5. 노동위원회는 문제의 해결에 대한 결론 및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, 양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위원회의 결론 및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는 적절한 협력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.

6.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, 요청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.

7.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제공한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한다. 협의는 상호 합의한 장소에서 열린다.

8.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.

## 제16.6조

### 협력

양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 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하면서, 부속서 16-가에 규정된 협력 활동을 개시하고 발전시키기로 약속한다.

부속서 16-가  
노동 협력

1.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 간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.

가. 상호 관심 있는 정책 분야 및 그 효과적 적용

나. 노사관계

다. 근로조건

라. 산업안전보건

마. 직업훈련과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

바. 공공 고용서비스

사. 노동통계, 또는

아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

2.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이행될 수 있다.

가. 연구 방문을 포함한 정부 대표단, 전문 직업인, 전문가, 학자 및 강사 간 교류

나. 관련 발간물 및 전문분야 논문의 교환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표준·규정·절차 및 우수 관행에 관한 정보의 교환

다. 공동회의, 세미나, 워크숍, 회의, 훈련 및 대외접촉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의 조직

라. 기술적 도구를 포함하는 협력사업과 시연의 개발

마. 인정된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것을 포함한 공동연구사업, 연구 및 보고에의 참여, 또는

바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기술적 교류 또는 협력

3. 제2항에 따라 합의된 모든 협력 활동은 이용 가능한 자원뿐만 아니라 각 당사국의 노동 우선순위와 필요를 고려한다. 상호 결정으로 착수한 특정 활동이나 사업도 별도 약정에 문서화 될 수 있다.

4. 각 당사국은, 적절한 경우, 자국의 노조와 사용자 또는 그 밖의 인과 단체가 잠재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데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.

5. 양 당사국은 그들 간의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및 입법적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협력 활동을 수행한다.